

VIII. 口腔衛生科 豫防齒學教育

신구전문대학 치위생과

文 赫 秀

치아의 청결이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의 예방에 중요하다라는 것이 인식되어, 구강병 예방처치가 구강건강을 유지 내지 발전시키는 데에 꼭 필요하다고 확신한 Fones 박사가 1905년 처음으로 구강위생사를 훈련시켜 구강병예방처치를 시도한 결과 매우 큰 구강병예방효과를 확인하게 되어서, 1913년에는 세계적으로 처음 구강위생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시발된 구강위생사제도는 뉴질랜드로 건너가서는 학교치아간호원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치아치료사 등으로 세계 각국에서 각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명칭과 역할이 조금씩 달라졌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기본 역할은 구강병예방처치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도 구강위생사제도를 도입하면서 명칭을 치과위생사로 하고,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1항 6호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치과위생사는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라고 구강위생사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도 역시 구강위생사의 업무는 구강병예방처치를 가장 핵심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79년 8월 제1회 구강위생사교육훈련기관 현직교수 연찬회에서 설정된 국가수준 구강위생사교육훈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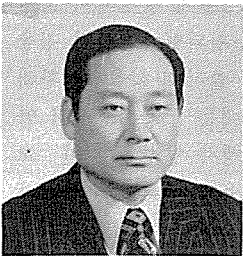
1. 구강보건교육을 할 수 있다.
2. 구강병예방처치를 할 수 있다.
3. 공중구강보건을 유도 발전시킬 수 있다.
4. 구강진료보조활동을 할 수 있다.
5. 국민학교 아동의 2대구강병에 대하여 조기 처치를 할 수 있다.
6. 새로운 구강보건지식과 기술을 수용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강병 예방처치와 관련된 교육목표에다 아직 구강보건분야의 보조인력이 전무한 우리 나라 현실이 감안되어 구강진료보조활동이 추가되어 있다. 그러나, 이 구강진료보조활동은 잠정적인 것이어서, 구강위생사의 업무 중에서는 지엽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다운 의미의 구강위생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구강위생사가 현재 우리 나라에 몇명이나 존재하고 있을 것인가의 심스럽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나라 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구강병예방처치에 관한 이론은 비교적 많이 다루어 지고 있으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구강병예방처치가 전무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진다. 치학의 세계적 추세가 보철을 위주로 하는 수복치학에서 구강병을 사전에 발생되지 않게 하는 예방치학 위주로 이미 전환되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도 하루 빨리 방향을 전환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환에는 구강위생사의 역할이 크다 할 수 있다. 구강위생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예방치학교육도 이론과 실기가 병행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만이 사회에 배출되었을 때,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과대학에서 행하는 예방치학교육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부속치과병원에서 임상적으로 구강병예방처치법을 교육시켜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치위생과에서 행하는 예방치학교육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도 치위생과가 있는 교육훈련기관에는 부속치과병원이 설치되어, 임상실습을 통해서 실기가 숙달되어야 한다. 특히 구강병예방 처치기술을 숙달하기 위한 구강위생사 교육에서는 실기 위주의 교육이 요구됨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속 치과의원만으로는 충분한 실기숙달에는 미흡하다.

그래서 구강위생사교육훈련기관의 인근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구강병예방사업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실기를 숙달하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구강위생사가, 숙달하여야 할 구강병예방처치실기는 전문가 불소국소도포, 치아우식예방을 위한 식이조사·분석·상담·처방, 치면열구전색,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예방을 위한 치면세마 치아우식활성시험, 구강진료실 내에서의 환자교육, 각 개인에 적합한 세치제 선택, 각 개인에 적합한 잇솔질 방법과 잇솔종류 선택 등으로 요약되어 진다. 이상과 같은 실기가 구강환경이 서로다른 모든 환자마다 적절하게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물론 위의 실기를 위한 이론적 배경도 교육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상과 같이 구강위생사교육기관에서 구강위생사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교육훈련되어지기 위해서는 치과대학 예방치학교육과 연계성을 가진 구강위생사를 위한 예방치학교육 목표가 구체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교육시설등 여건이 또한 갖추어져야 한다. 그

리고, 구강위생사국가시험도 실기 위주로 전환되어 구강병예방처치기술을 검정할 수 있는 실기시험방법도 개발되어 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전환되어질 때 우리 나라에도 구강위생사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진정한 의미의 구강위생사가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명칭만 구강위생사지 실제로는 현재와 같이 구강진료 보조원으로 전락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이상을 요약해 보면 구강위생사교육은 현장에서의 구강병예방처치기술의 숙달을 위한 실기교육위주의 교육과정마련과 시설등의 여건 조성이 요구되고 국가시험도 이러한 실기숙달을 검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지고, 치과대학 예방치학교육방향 및 방법의 개선등 치학의 방향전환등의 사회여건이 조성될 때 우리나라 구강위생사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문대학 구강위생과 예방치학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하여, 문교부에서는 전문대학 구강위생과의 필수교육시설로 부속치과의원을 규정해야 하고, 각 치과대학에서는 예방치학교육을 하루라도 빨리 임상화 해야 한다고 본다.

◎ 일본 치과의사회장이 신민철회장



! <申旻澈지협회장>

초청

齒協은 5일 日本齒科醫師會長으로부터 FDI 참석 귀국에 日本을 방문해달라는 공식초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다는 회한을 발송했다.

9월12일자로 日本齒科醫師協會 야마자키 會長은, 韓-日 양국간의 치과의료분야 발전은 물론 각기 당면하고 있는 자국의 치과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여 상호 협력을 모색해 나갈것을 희망하고 이와 관련 齒協 申旻澈회장이 오는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FDI총회 참석후 귀국길에 日本을 방문해줄것을 정식으로 초청했다.

야마자키 會長은 申회장의 日本 방문일정을 가능한 11월15~17일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밝히

고 따라서 日本齒科醫師會는 그에 따른 준비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과 체재 숙박비를 부담하고 16일에는 환영 리셉션을 갖고 상호이해와 우의를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 James R Friction교수 (미 미네소타대 치대교수, 악관절 및 악안면동통 클리닉 책임교수) 내한강연

미네소타 치대 Friction교수가 지난 9월5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한국을 방문 서울대 치대를 비롯 8개 치과대학에서 강의를 한것을 비롯하여 9월8일에는 대한구강내과학회에서 "악관절장애 및 근막동통 증후군의 감별진단과 치료"에 대해 특별강연을 한바 있다.

Friction교수는 지난 1년간 미네소타에 수학했던 서울대 치대 정성창교수가 초청한 것이다.